

보도시점 2026. 7. 13.(월) 16:00 (2026. 7. 13.(월) 석간)

고용노동부, 청주지역 대형건설현장 소장들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

- 폭염 시 온열질환 및 떨어짐·깔림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 방안 논의
- 중소규모 건설사 참관을 통해 대형현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

고용노동부 청주지청(지청장 연창석)은 7월 13일(월)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폭염 시 온열질환 및 떨어짐·깔림 등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청주지역 대형건설현장 소장들과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오늘 간담회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 소장 20여명이 참석하여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각 현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논의하였다. 특히 대·중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중 중소규모 건설사 대표 등을 참관케하여 대형현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.

연창석 지청장은 “올해 청주지청 관내 사망재해는 전년 대비 약간 감소(6명→5명) 하였으나, 전국적으로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.”라고 강조하면서, “특히 최근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온열질환 예방과 폭우피해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.”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	책임자	과 장	김영남 (043-279-5100)
		담당자	감독관	양일준 (043-279-5141)



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



187에 외국어 번역본

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℃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온열질환 예방조치

- ✓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- ✓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- ✓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(쉼터 및 그늘진 장소) 설치



체감온도 계산기

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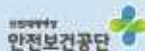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물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|
| 냉방장치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폭염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·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✓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|
| 휴식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✓ 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|
| 보냉장구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|
| 119 신고
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온열질환자·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✓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|

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체감온도 33℃ 이상
폭염주의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|
| 체감온도 35℃ 이상
폭염경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|
| 체감온도 38℃ 이상
폭염중대경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|



고용노동부



안전보건공단



질병관리청



온열질환 민감군 관리

▶ 온열질환 민감군

- ❑ 폭염작업 신규배치자
- ❑ 과거 온열질환 경험자
- ❑ 고령자, 고혈압·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



▶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

- ❑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
- ❑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
- ❑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
- ❑ 폭염작업 시간 단축, 휴식 시간 추가 배정

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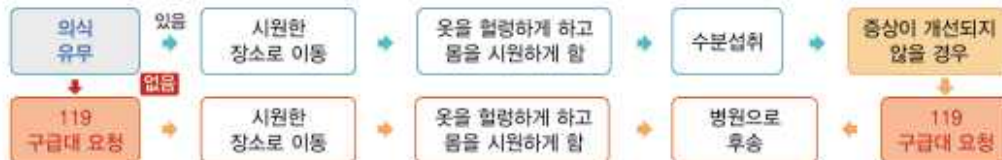
*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

▶ 온열질환 증상

- ❑ 평소보다 높은 체온, 땀을 많이 흘림, 어지러움, 메스꺼움, 근육 경련, 의식 저하

▶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

- ❑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.
- ❑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.
- ❑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. ※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
- ❑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.



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

▶ 밀폐공간은 '질식사망 위험공간'입니다.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.

- ❑ 밀폐공간(탱크·저장용기의 내부, 맨홀 등)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'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'입니다.

반드시 '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'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- ② 작업전·작업중 지속적인 환기
- ③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

※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('25.12.1) 주요내용

- ❶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
- ❷ 측정결과 기록·보존
- ❸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
- ❹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·교육 강조



고용노동부

안전보건공단



질병관리청



공통사항

- 집중호우·태풍 예비 특보 발령지역 사업장은 **재택근무 실시** 및 **휴가** 적극 권고
- 호우·태풍에 의한 **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**이 있는 경우 **작업중지**
* 산안법 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,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- 호우·태풍 발생시부터 **기상특보 발령 상황 상시 모니터링**
* (기상청) 날씨누리 홈페이지, 기상특보 상황(날씨 > 기상특보 > 특보현황)

강풍

- ☑ 각종 시설물, 표지판, 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
- ☑ 타워크레인 붐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브레이크 해제(부러짐, 쉼 방지)
- ☑ 강풍 시 철골조립,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

침수

- ☑ 배수로,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
- ☑ 침수 위험 장소 빗물 유입 차단 조치
- ☑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
- ☑ 침수된 장소에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(감전, 질식 위험 확인)

붕괴

- ☑ 옹벽,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
- ☑ 방수포,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 실시
- ☑ 붕괴매몰 발생 우려 장소에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
- ☑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사전 대비태세 유지 (비탈면 유실 여부 점검,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등)

감전

- ☑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(침수 우려 시 전가설비 이전 설치)
- ☑ 누전차단기 연결, 외함접지,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
- ☑ 침수 등 손상된 기계·설비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